

##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학교 등교수업 상황별 대처 및 출결·정기고사 성적처리 방안

순	분류	대응방안	후속조치 및 출결처리·인정점 부여방안	제출 서류 (택1)
1	확진 받은 학생 발생	[학교] 지필평가 중단 (해당 학생) 등교 중지 (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)	[학교] 방역조치 등 상황 완료 후로 지필평가를 연기하거나 평가방법 등을 조정 -(해당 학생) 출석인정처리 및 100% 인정점 부여	①입원치료통지서 ②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*, 문자통지사본

▲ 대체학습(공통 플랫폼 콘텐츠 활용 및 교과목별 수업자료·과제제시형 학습 병행) 제공

▲ 등교 재개 시, 증상과 감염성이 소실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, 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

순	분류	대응방안	후속조치 및 출결처리·인정점 부여방안	제출 서류 (택1)
2	격리 통지 받은 학생 발생	[학교] 사태의 심각성 여부를 고려하여 이후 지필평가 중단 혹은 실시 지속 여부 판단 (해당 학생) 등교 중지 (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)	▶[학교] 지필평가 지속 경우 -(해당 학생) 출석인정처리 및 100% 인정점 부여  ▶[학교] 지필평가 중단 경우 - 상황 완료 후로 지필평가를 연기하거나 평가방법 등을 조정	①학생본인의 격리통지서 또는 가족(동거인)의 격리통지서 ②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*, 문자통지사본
	가족(동거인)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발생			

▲ 대체학습(공통 플랫폼 콘텐츠 활용 및 교과목별 수업자료·과제제시형 학습 병행) 제공

순	분류	대응방안	후속조치 및 출결처리·인정점 부여방안	제출 서류 (택1)
3	의심증상자** (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, 폐렴 등) 발생	등교 전	[학교] 지필평가 지속 (해당 학생) 등교 중지 (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)  [학교] 지필평가 지속 (해당 학생)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후 학부모에게 학생 인계 이후 등교 중지 (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)	①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②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(소견서)  ※ 의심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
	등교 후			

▲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\*\*은 등교중지대상자이므로 증상 소멸 전까지는 등교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 응시를 희망할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다.  
이 경우 별도 시험실 운영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.

① 코로나19검사 결과 '음성'이고 별도의 자가 격리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는 경우 (이때,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(예: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등))

② 임상증상이 있으나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(의사소견서) 등을 제출한 경우

▲ 대체학습(공통 플랫폼 콘텐츠 활용 및 교과목별 수업자료·과제제시형 학습 병행) 제공

순	분류	대응방안	후속조치 및 출결처리·인정점 부여방안	제출 서류 (택1)
4	고위험군학생	[학교] 별도 시험실 운영(여부는 학교장 판단)으로 시험 기회 제공	(해당 학생) -(심각·경계 단계_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) 출석인정처리 및 100% 인정점 부여 -(관심·주의 단계_학부모(보호자)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) 질병결석처리 및 80% 인정점 부여	고위험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

- ▲ 고위험군학생: 의사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(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) 및 장애(보건복지부 '장애복지카드'소지자에 한함)를 가진 학생
- ▲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.
- ▲ 대체학습(공통 플랫폼 콘텐츠 활용 및 교과목별 수업자료·과제제시형 학습 병행) 제공  
\_심각·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한함

순	분류	대응방안	후속조치 및 출결처리·인정점 부여방안	제출 서류
5	기타결석(감염우려)	[학교] 별도 시험실 운영(여부는 학교장 판단)으로 시험 기회 제공	(해당 학생) 기타결석처리 및 80% 인정점 부여	학부모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

- ▲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**심각·경계**”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
순	분류	대응방안	후속조치 및 출결처리·인정점 부여방안	제출 서류
6	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***	[학교] 별도 시험실 운영(여부는 학교장 판단)으로 시험 기회 제공	(해당 학생) 출석인정처리 및 70% 인정점 부여 (*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을 허가한 경우에 한함)	사전신청서(학습계획서) 사후 결과보고서

- ▲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**심각·경계**”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일수를 10일→34일로 확대 시행
- \* (유의사항)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진급·졸업 불가

순	분류		출결처리·인정점 부여방안
7	미인정결석	증빙서류 미제출	(해당 학생) 미인정결석처리 및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 부여
		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	